

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

제정 2011. 8. 9 조례 제1163호
일부개정 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 2018. 8. 9 조례 제183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제2조(기본원칙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·운영할 경우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제3조(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) 시장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(이하 “시설사업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(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하고,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제4조(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)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 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.

제5조(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8. 9>
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<개정 2018. 8. 9>

1.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용인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한 의원 3명
3. 시의 업무 관련 국·소장

④ 시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인원, 지원자격,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8. 9>

제7조 삭제 <2018. 8. 9>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 <개정 2018. 8. 9>

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8. 8. 9>

제9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사업시행자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. <개정 2018. 8. 9>

제11조 삭제 <2018. 8. 9>

제12조 삭제 <2018. 8. 9>

제13조(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)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, 법 제9조에 따라 민간

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②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1.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내용
2. 타당성 조사결과
3. 위원회의 심의결과
4. 실시협약의 주요내용
5.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
6.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
7.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
8. 그 밖에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(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8. 9>

1.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.
2. 년 1회 정기적으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8. 9>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

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

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별표 생략.

부칙 <2018. 8. 9 조례 제183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